

귀하에게 IEP 가 있거나 과거에 IEP 가 있었고

(또는 IEP 가 있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일 경우)

그리고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에서 수업정지처분 또는 퇴실당한 적이 있거나  
학교에서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뉴욕시 교육청과의 합의문을 잘 읽어주십시오.  
**본 문서의 내용이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 합의문은 뉴욕시 공립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거나 이전에 다녔던 장애학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생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징계조치로서 부당하게 학급에서 수업정지 또는 퇴실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 장애를 이유로 학급에서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 학생
- 장애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실에서 수업정지 또는 퇴실조치를 당한 적이 있는 학생
- 징계조치로서 부당하게 학교에서 전학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본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합의 이행 시기 동안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합의안은 해당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합의문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얻으려면 첨부된 공고를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연방 지방 법원 뉴욕 동부 지원)  
*E.B. et al. v.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et al.*, 02 CV 5118

4-21 세의 IEP 가 있는 뉴욕시 거주자로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징계조치로서 학급에서 퇴실, 수업정지를 당했거나 학교에서 퇴학이나 전학조치를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은 본 집단소송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고를 잘 읽어주십시오.

이에 제시된 합의안(“ 합의안” ) 은 뉴욕시 교육청(“ DOE” )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부적절하게 장애 학생들에게 퇴실 또는 퇴학조치를 내림,
- 장애 학생들이 정학 또는 수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안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 부적절하게 장애학생들을 퇴학 또는 전학시킴

집단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대가로 피고측은 다음의 합의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합의안에 의거한 해당 집단 소속 구성원들의 권리는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합의안에 의거한 귀하의 법적 권리 및 선택권:**

거부	본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	본 합의안의 공정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본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귀하는 본 합의안의 제시된 조건에 구속됩니다.
- 이러한 권리와 선택권은 본 공고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유효기일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 기본 정보

### 1. 본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연방소송은 뉴욕시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지역 학군 학교, 75 학군 학교, 대안 고등학교 및 정학 장소 포함)에 다녔던 장애 학생 및 이들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학생들(이하 “ 원고 대표”)은 2002년 9월 19일, 교육청 (“ 피고”)이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다니던 장애학생들에게 징계조치로서 부적절하게 퇴실, 수업정지,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내리거나 퇴실 또는 수업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연방 및 주법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잘못된 점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 집단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원고 대표는 본인들, 그리고 이러한 잘못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다른 학생들을 대신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서는 상기 원고 대표를 포함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일명 “ 집단 대표”가 되어,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집단 대표, 그리고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 기타 모든 사람들이 “ 집단 구성원” 또는 “ 집단”이 됩니다.

이것은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단일 법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본 소송에 대한 합의안 공청회는 2015년 7월 23일, 9:30a.m.에 열릴 예정이며, 공청회 후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합의안을 승인하고 집단 구성원들을 합의안 조건에 구속시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3. 합의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대표나 피고인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양측은 공정하고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합의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련자들이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대표 및 그들의 변호인단은 본 합의안이 모든 집단구성원들에게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합의안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귀하가 합의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귀하가 집단의 구성원인지 알아야 합니다.

### 4. 제가 합의안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래 설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서 인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유치원에서 21 세 사이의 장애를 가진 뉴욕시 아동으로서, 적절한 통보 없이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에서 제외되어 정학, 수업정지, 전학, 퇴학, 퇴실, 접근 금지, 또는 기타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무료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거나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자.

법원에서는 본 집단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개 그룹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IEP 가 있는 학생으로서 교육장 정학이나 퇴학으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한 집단 구성원들.
- IEP 가 있는 학생으로서 집단 구성원의 학교 소속 교직원이 내린 징계조치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한 집단 구성원들.
- IEP 가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측이 집단 구성원을 학교나 학급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한 집단 구성원들.
- IEP 가 있는 학생으로서 퇴학이나 전학 조치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한 집단 구성원들.
- IEP 가 없는 학생으로서 정학, 수업정지, 퇴실, 전학, 퇴학, 접근 금지, 제외 또는 기타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집단 구성원들.
- 재활법 제 504 항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서 정학, 수업정지, 퇴실, 전학, 퇴학, 접근 금지, 제외 또는 기타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집단 구성원들.

### 5. 그래도 제가 해당되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포함되는지 아직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합의안 - 뉴욕시 교육청은 본 합의안의 조건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6. 본 합의안 하에서 학생에게 돈이 지급됩니까?

본 합의안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보상성 또는 금전적인 구제도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 소송이 유효한 기간 동안 귀 자녀, 또는 귀하 본인을 위한 보상성 구제를 여전히 뉴욕시 교육청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데에는 마감시한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나 Advocates for Children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의안에서는 어떤 것을 제공합니까?

본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합의안 이행 기간동안 학생 징계에 관한 특별한 요건 및 절차가 시행될 것입니다. 본 합의안은 법원에서 합의안을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 학년도, 최대 5 학년도간 유효합니다. 실천사항은 광범위하게 다음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 (1) 장애학생에 대한 정학 및 퇴학, 그리고 정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 서비스
- (2) 장애학생의 강제 전학 및 퇴실조치
- (3) 장애학생을 전학시키거나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

원고측은 합의안 이행시기 동안 교육청이 합의안에서 요구한 실천사항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본 공고는 상기 각 항목에 대한 합의안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 정학

교육장 정학 공청회가 있기 전에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

본 합의안 하에서는, 각 학교들은 반드시 집단 구성원이 교육장 정학(6 일 이상의 정학)을 받기 전에, 그리고 학생이 교육장 정학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등교정지 조치를 받아 정학 장소로 재배치 되기 이전에 취해야 할 특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청의 해당 학군 내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로부터 교육장 정학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합의안은 교육장 정학이 있기 전, 학생이 어떤 경우에 학교에 머물러도 되며, 어떤 경우에 학생을 공청회 전이라도 즉각 학교에서 내보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일부 경우, 학생을 교육장 정학 공청회 이전에 학교에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요구됩니다.

장애 확인 검토 (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

장애 확인 검토(" MDR" )란 (a) 학급에서 퇴실조치 또는 수업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로 인해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판단 또는 (b) 이 학생의 행동이 교육청에서 학생의 IEP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학교에서 MDR 회의를 통해 정학을 야기시킨 행동의 원인이 학생의 장애의 결과이거나,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의 IEP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측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정학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 합의안 하에서는, 교육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IEP 가 있는 학생의 MDR 를 실시해야 합니다:

1. 학생이 한 학년도 동안 연속 십(10) 수업일간의 정학을 받은 경우;
2. 학생의 퇴실조치(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또는 수업정지)가 한 학년도 내의 40 수업일 기간동안 **3 차례 혹은 그 이상**이 되어 축적 징계일수가 총 11 일 이상이 될 경우;
3. 학생의 퇴실조치(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또는 수업정지)가 한 학년도 내 **2 차례 혹은 그 이상**이 되어 축적 징계일수가 총 11 일 이상이 될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 다음과 같이 판단할 경우:(i) 학생의 행동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원인이 되었던 행동(들)과 근본적으로 유사할 때, 그리고 (ii) 학교장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여 “ 퇴실의 패턴” 이 형성된다고 판단할 때:
  - a. 이전 퇴실조치의 기간;
  - b. 학생이 학급이나 학교에서 퇴실 또는 정학 조치를 당한 총 시간; 그리고
  - c. 각 징계조치간의 시기적 근접성.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본 합의안에서는 MDR 이행을 위한 타임라인 및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MDR 은 퇴실, 학교장 정학 컨퍼런스 또는 교육장 정학 공청회로부터 5 일 이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만약 학생을 정학 공청회 또는 혐의인정 이전에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았고, MDR 이 요구될 경우, 이 학생에게는 MDR 이 이행되기 전까지 정학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교육청에서 교육장 정학을 철회했거나 공청회를 통해 혐의가 유효화 되지 않을 경우, MDR 을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장차 정학일수를 고려하여 MDR 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 MDR 에서 학교측은 반드시 MDR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한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학교측이 참고하고 의사결정 절차에 지침으로 사용한 문서 및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 합의안의 2015-16, 2016-17 및 2017-18 학년도 기간동안 교육청에서는 일부 MDR 에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청 산하 학교들의 MDR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 정학 계획 및 IEP 팀 회의

교육청에서는 IEP가 있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연속 10 수업일 이상 정학을 받고 정학 장소에 배정받은 학생을 위한 정학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학생이 정학기간동안 받게 될 특수교육 프로그램 역할을 합니다. 이 정학 계획에는 IEP 목표, 중재, 프로그램, 지원, 시험조건 조정, 조정된 진급 기준, 의료 경고, 통학서비스, 숙달 레벨, 정학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할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정학 계획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모가 회의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집단 구성원이 정학 장소에 처음 등교한 날로부터 10 수업일 이내에 IEP 팀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정학시점을 기준으로 집단 구성원의 IEP 유효일자가 끝난 경우, 교육청에서는 정학계획을 작성하되 유효기간이 지난 IE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학 기간 중에 새로운 IEP를 작성하게 될 경우, 필요에 따라 정학 계획도 갱신될 수 있습니다.
- IEP가 있는 집단 구성원은 정학계획에 따른 학습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각 집단 구성원은 정학계획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가 정학 기간동안 본인이 일반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였고, 따라서 본인의 IEP에 명시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개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집단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정학 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학계획이 일반교육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을 함께 교육하는 학급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학급이 집단 구성원의 IEP와 다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학계획이 본 합의안에서 요구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을 경우.
  - 정학 계획이 IEP 대신 사용되는 경우.

## 정학 중의 IEP 및 평가

집단 구성원이 11에서 30 수업일간의 정학을 받았을 경우, 교육청은 정학 기간동안 IEP 회의를 개최하거나 3년차 재평가를 실시해야만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러한 집단 구성원을 위한 정학계획은 이들의 기존 IEP를 근거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 학생의 IEP 가 유효기간이 다 되었을 경우, 집단 구성원이 재학 중인 학교는 집단 구성원이 정학조치 후 최초로 복교한 날을 기준으로 15 수업일 이내에 IEP 회의나 3년차 재평가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 3년차 재평가에서 신규 평가를 요구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추가로 15 수업일간의 기한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재평가를 위한 IEP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이러한 타임라인은 학부모가 IEP 회의나 평가를 취소하거나 재조정할 경우, 그리고 독립된 평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집단 구성원이 30 수업일 이상 정학을 받고 정학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IEP 가 1년 이상 된 것일 경우, 혹은 정학이 시행되는 중에 1년을 초과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IEP 회의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 IEP 회의는 다음 둘 중에 더 늦은 날짜로 잡을 것입니다: (1) 정학 공청회 또는 혐의를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20 수업일 이후 (2) 제일 마지막 IEP 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 유의 사항: 이러한 타임라인은 학부모가 IEP 회의나 평가를 취소하거나 재조정할 경우, 그리고 독립된 평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집단 구성원이 30 수업일 이상 정학을 받고 이 학생의 IEP 가 정학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20 수업일 이내에 1년이 지날 경우, 정학만료 후 20 수업일 이내에 IEP 회의를 개최하여야만 합니다.

- 3년차 재평가에서 신규 평가를 요구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추가로 15 수업일간의 기한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재평가를 위한 IEP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이러한 타임라인은 학부모가 IEP 회의나 평가를 취소하거나 재조정할 경우, 그리고 독립된 평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

- 본 합의안은 IEP 가 있는 학생들 중 1년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추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학 장소에서는 **4개 핵심 과목 영역**의 학습지도를 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IEP 를 가진 집단 구성원들에게 **읽기 중재 전략에 있어 추가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 IEP 가 있고 1년 정학처분을 받은 집단 구성원이 교육을 받는 각 정학 장소에는 최소 1인의 특수교사, 1인의 보조교사 및 1인의 가이던스 카운셀러, 소셜워커 및 학교 심리상담사를 두어야 합니다. 특수교사들은 다른 교직원과 IEP 가 있는 학생의 진척을 논의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 1년 정학을 받은 IEP가 있는 집단 구성원들은 정학 계획의 이행이라는 목표에 따라 학업 프로그램과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 정학 장소를 관장하는 교장은 IEP가 없는 학생들이 특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들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정학 장소 교직원들 또한 학교장이 이러한 의뢰를 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및 교직원들이 연방법에 따라 학생을 의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 학생이 정학 장소를 떠나 전에 다니던 학교, 또는 새로운 학교로 돌아갈 경우, 정학 장소에서는 학생의 기록 (예, 정학 계획, IEP, BIPS 및 기타 공식 평가)을 빠짐없이 이관하여야 하며, 학생의 교육발달과 관련된 기타 문서들도 제공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전학 및 학급에서의 비공식 퇴실조치**

본 합의안은 학교들이 IEP가 있는 학생들을 특정 절차적 요건에 따르지 않은 채 전학이나 퇴실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전학가서도 현재 학교에서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받게 될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본 합의안에서는 교육청이 IEP 회의 없이도 정학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학 기간동안 학생을 한 군데 정학 장소로부터 다른 정학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안 조건 하에서 교육청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학생을 학급이나 학교에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는 교사가 실시한 퇴실조치나 수업정지일 경우 본 합의안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퇴학 및 GED 또는 고등학교 대안 프로그램으로의 전학

본 합의안 하에서 공립학교들은 IEP 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퇴학 또는 GED 나 대안 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전학시킬 수 없습니다. 본 합의안에서는 학교에서 퇴학 또는 전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는 학생을 퇴학 또는 전학시키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와 IEP 를 가진 학생이 참석하는 일명 플래닝 인터뷰라는 회의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 학교는 학생이 정학으로부터 복교한 최초 20 수업일 이내에 플래닝 인터뷰 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 플래닝 인터뷰의 목적은 학교가 학생의 학습 및 행동상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여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되는 대신, 학업을 계속하여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학교는 플래닝 인터뷰 전에 학부모에게 문서상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여기에 해당 학생의 전학이나 퇴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및 학생이 만 21 세가 되는 학년도를 마칠 때까지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학교는 학부모에게 플래닝 인터뷰 패킷이라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퇴학을 전후한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플래닝 인터뷰 절차의 일환으로, 학교 교직원들은 반드시 학생의 이전 징계기록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의 특수교사는 반드시 학생의 IEP 및 플래닝 인터뷰 양식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 학교는 IEP 가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때에는 이 학생이 연달아 20 수업일간 결석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학생의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육청 내 다른 직원이 IEP 를 가진 학생의 전학이나 퇴학을 검토해야만 하며, 검토 결과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징계조치로서 내려진 것이라 판단할 경우 학교 및 학생과 협의해야 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플래닝 인터뷰 자료에 IEP 를 가진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전학 또는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 합의 절차:

### 8. 법원에서는 합의안 승인을 언제 결정하게 됩니까?

법원은 2015년 7월 23일, 9:30a.m.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의안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합의안 공정성 청문회” ). 판사가 합의안 공청회 이후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라도 항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해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는 불확실합니다. 합의안이 승인되고 항소가 없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합의안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을 실행할 것입니다.

### 9. 이 소송에서 제게 변호인이 있습니까?

예. 귀하가 집단 구성원에 해당될 경우,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변호인단 및 Davis Polk & Wardwell LLP 이 본 소송에서 귀하를 대변합니다. 이들 변호인단은 귀하에게 변호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개별 변호인을 고용하고 싶으신 경우, 귀하가 비용을 부담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 10. 이들 변호인단에게 사례가 지급됩니까?

동의서에 따라 본 집단의 변호인단에게는 이들이 그간 본 소송을 위하여 들인 시간과 수고(조사, 법정논쟁, 합의안 도출, 합의안 이행 모니터 등)에 따른 적절한 변호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비 지출로 인하여 교육청이 본 합의안 하에서 제공하게 될 교육 서비스가 감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 합의안 거부

귀하는 법원에 본 합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 11.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어떻게 알립니까?

귀하가 집단 또는 하부 집단 구성원일 경우, 귀하는 합의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할 것입니다. 거부하시려면 귀하는 *E.B. et al. v.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et al*에 거부한다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셔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및 합의안에 거부하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거부 편지는 다음 주소로 보내시고 2015년 7월 16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The Clerk of the Court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Rebecca Shore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151 West 30<sup>th</sup>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1

Janice Birnbaum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 General Litigation Division  
100 Church Street, Room 2-195  
New York, NY 10007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T&I-22743 (Korean)

## 법원의 합의안 공청회

법원에서는 본 합의안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발언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본 합의안의 결과로서 교육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 공청회에 참석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12. 법원은 언제, 어디서 본 합의안 승인을 결정할 예정입니까?

법원은 2015년 7월 23일, 9:30a.m.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ew York 11201, Courtroom 4CS 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에서 법원은 본 합의안이 공정하고 타당하며 적절한지 숙고할 것입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판사는 공청회에서 발언기회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공청회 이후, 법원은 합의안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13. 제가 공청회에 참석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Advocates for Children 및 Davis Polk & Wardwell LLP 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비를 들여 본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다시 발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감기한 내에 거부 의사를 밝힌 서신을 발송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석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4. 제가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합의안 공청회에서 발언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참석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발언기회를 요청하실 분은 *E.B. v.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No. 02CV5118 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서신을 작성하십시오. 여기에는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및 귀하가 증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 증인들의 성명 및 귀하가 공청회에서 증거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귀하의 서신은 반드시 2015년 7월 16일 일일자 이전 소인이 찍혀야 하며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The Clerk of the Court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질문이 있으시거나 합의동의안 전문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878-4559 번 또는 이메일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로 문의하십시오.

Rebecca Shore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151 West 30<sup>th</sup> Street  
New York, New York 10001

Janice Birnbaum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 General Litigation Division  
100 Church Street, Room 2-195  
New York, NY 10007

15. 제가 아무 조치도 안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미래에 본 합의안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

16. 본 합의안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본 공고문은 합의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에 있습니다. 본 공고문이 동의안 본문과 상이할 경우, 동의안이 우선합니다.

동의안 전문은 Advocates for Children 웹사이트 [www.advocatesforchildren.org](http://www.advocatesforchildren.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dvocates for Children 에 전화 (973) 878-4559 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